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6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7.

발 의 자 : 김정호 · 김남희 · 허종식
이연희 · 이수진 · 서왕진
박 정 · 윤후덕 · 임미애
김용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,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,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.

그런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현황에 관해서도 조사하고,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·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관련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조).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산업입지에 관한 조사)”를 “(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사(이하 “입지조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”를 “조사를 하거나 관련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의2 중 “산업집적 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”을 “산업집적기반시설, 산업기반시설,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와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,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”를 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

중 “입지조사 결과를”을 “조사 결과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입지조사”를 “조사”로, “산업입지공급계획”을 “산업입지수급계획”으로 한다.

4의3.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관리

이 경우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산업입지에 관한 조사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<u>조사(이하 “입지조사”라 한다)</u>를 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4의2. <u>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등의 관리</u> <신설> 5. (생략)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<u>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</u>와 제45조의17에 따른 <u>한국산업단지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,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, 「중소기업협동조</u>	제6조(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조사를 하거나 관련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</u>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<u>산업집적기반시설, 산업기반시설,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-----</u> 4의3. <u>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관리</u> 5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</u>

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입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요한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-----
-----조사 결과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-----
-----.

④ -----조사-----

-----산업입지수급계획-----
-----.